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2017누77]

사 건 명 : 직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 원고

부산 사하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1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 론 종 결 : 2018. 7. 4.

판 결 선 고 : 2018.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직무상 질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이하 생략생)는 2016. 4. 20.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 이 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관장(5급기관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2. ○○수산의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으로 구성된 총 6척의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근해에서 고등어 등을 어획하는 ○○○○어업의 운반선인 ○○호(이하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2016. 7. 9. 20:20경 ○○도 주변 ○○4-○ 해구(○○포 약 20km)에서 본선으로부터 운반선 ○○호로 어획물(생선)을 옮기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 갑판에 설치된 하역 원치(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 레버로 원치를 조작하던 중 레버를 잡은 채 실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9. 23:00경 ○○대학교병원에서 전교통동맥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응급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고, 2016. 8. 17. ○○대학교 ○○○병원에서 뇌실 복강단락술을 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4.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승무중 직무외 질병으로 승인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근무하는 이 사건 선박 기관실의 업무환경은 ① 평소에도 기관의 소음이 심하고 기관의 열기로 인하여 통상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훨씬 높았고,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는 여름철로 다른 계절보다 소음이 심하고, 실내온도가 높았다.

2) 이 사건 선박의 잦은 입출항으로 인하여 기관실 작업이 빈번하였고, 기관장임에도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조업에 동원되거나 운반선에 어획물을 하역하는 작업에 동원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198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호 등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뇌질환을 겪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난 것이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1. 승무경력증명서 기재와 같이 1980. 4. 29.부터 ○○호 등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2016. 5. 12.부터 2016. 7. 9.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의 업무내용은 ① 기관실 당직업무[주엔진 및 보조엔진을 점검하고, 기름 이적량을 확인하는 업무로서 3조(1조:기관사, 2조:조기장, 3조:기관장과 조기수) 교대 업무], ② 해상하역 업무(본선에서 운반선으로 어획물을 적재할 때에 의자에 앉아서 하역 원치 레버 조작 업무), ③ 항구 하역업무(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할 때에 의자에 앉아서 하역 원치 레버 조작 업무), ④ 출항하기 전에 기름 적재 및 얼음 적재 업무, ⑤ 월명기(음력 보름 전후에 생선이 잘 안 잡히는 시기를 말한다)에 선박을 점검하는 당직 업무(외주를 통해서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인데, ○○수산에 입사한 2016. 4. 20.부터 2016. 7. 9.까지의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은 별지 2. 뇌·심